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72 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이연희·이광희·박상혁

허종식 • 이인영 • 김윤덕

김남희 · 임미애 · 송재봉

서미화 · 한민수 · 정준호

이정문 • 이강일 • 복기왕

손명수 · 한준호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될 수 있음. 특히,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,경제적,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.

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.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제3장제6절에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2(가석방의 제한) 제87조제1호·제2호 및 제88조의 죄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6조의2(가석방의 제한) 제87조
	<u>제1호·제2호 및 제88조의 죄</u>
	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
	<u>아니한다.</u>